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5년 12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방법을 개선하고,「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상위법령 위반사항을 개정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피해방지단 구성방법 개선(안 제11조제4항제3호)

- 피해 방지단 추천방식을 읍면장 추천에서 야생생물협회 또는 환경부 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에서 추천으로 변경

나. 피해보상 제외 조항 삭제(안 제9조제3호, 제12조제1호 및 제2호)

- 의료비 부담금 10만원, 피해액 10만원, 피해면적 165㎡ 미만 조항 삭제

다. 보상금 지급절차 개선 및 삭제(안 제6조제1항, 제14조1항제1호 및 제2항, 제18조제1항)

-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여부를 결정하는 규정 삭제

라.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생년월일 기재(별지제1호～제6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의견없음.(2015. 10.22~11.11)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마. 성별영향평가분석 : 원안동의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토대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을 “토대로”로 한다.

제7조제3호 중 “제16조”를 “제20조”로 한다.

제9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피해방지단 구성은 야생생물관리협회 또는 환경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의 추천을 받아 관내 모범수렵인을 구성한다.

제1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중 “설치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중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신고가”를 “피해보상의 이의신청이”로 한다.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6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보상금 지급절차) ① 군수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6조(보상금 지급절차) ① ---------- ---------- ---- 토대로 ---------- ---------- ----------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지급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명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대상)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야생동물 자율구제 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3. 제20조 ---------- ----------
제9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지급제외)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본인 의료비 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삭 제>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11조(피해 및 구제금액 산정 기준) ① ~ ③ (생 략)	제11조(피해 및 구제금액 산정 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유해야생동물 자력구제와 대리포획에 대한 포상금은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 관한법률」 제23조제1항에 의해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하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피해방지단 구성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해당 읍면 지역에서 즉시 출동이 가능한 모범수렵인을 우선 선발하고, 이외는 군수가 관내 모범수렵인을 선발하여 구성한다.	3. 피해방지단 구성은 야생생물관리협회 또는 환경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의 추천을 받아 관내 모범수렵인을 구성한다.
제12조(피해보상제외)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피해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피해보상제외) ---------- ---------- ---------- ---------- -------.
1. 농작물 총 피해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삭 제>
2. 총 피해면적이 165평방미터 미만인 경우(다만, 피해보상금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13조(설치 등) ① 군수는 피해보상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성주군야생동물에의한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 조례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3조(설치 등) ① ---------- ---------- ---------- ---------- 설치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14조(기능) ① ---------- ----------.

1. 피해액 산정 및 보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삭 제>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인명·농작물 피해보상 총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삭 제>
제1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신고가 접수되어 위원장이 회의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18조(회의) ① ---------- 피해보상의 이의신청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별지1]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신고서

피해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통장번호	
피해발생현황	피해지역			
	피해발생날짜			
	가해야생동물			
	피해내용(발생경위)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00읍·면장 귀하

※ 구비서류

1. 피해발생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2. 의사소견서 등 치료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개 정 안

[별지1]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신고서

피해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통장번호	
피해발생현황	피해지역			
	피해발생날짜			
	가해야생동물			
	피해내용(발생경위)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00읍·면장 귀하

※ 구비서류

1. 피해발생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2. 의사소견서 등 치료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현 행	개 정 안

[별지2]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신고서

피해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통장번호	
피해발생현황	피해지역			
	피해발생날짜			
	가해야생동물			
	피해내용(발생경위)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00읍·면장 귀하

※ 구비서류

1. 피해발생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2. 의사소견서 등 치료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2]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신고서

피해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통장번호	
피해발생현황	피해지역			
	피해발생날짜			
	가해야생동물			
	피해내용(발생경위)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00읍·면장 귀하

※ 구비서류

1. 피해발생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2. 의사소견서 등 치료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현 행

[별지3]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실태조사서

피 해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피해조사결과	인명피해	피해내용		가해야생동물		
		피해경위				
	농작물피해	피해지역				
		피해농작물		가해야생동물		
		경작지면적	㎡	피해면적(A)		㎡
		농작물의 피해율(B)	%	농작물 보상단가(C)		원
		피해액 (D=A×B×C)	원	보상비율(E)		%
		최종 산정금액 (F=D×E)				원
피해보상 제한 여부	인명피해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 여부			여(), 부()	
		농업경영활동과 무관한 활동 중 피해 여부			여(), 부()	
		본인 의료비 부담금 10만원 미만 여부			여(), 부()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 지원 여부			여(), 부()	
	농작물피해	농작물 총 피해액 10만원 미만 여부			여(), 부()	
		피해면적 165㎡미만 여부			여(), 부()	
		경작금지지역 해당여부			여(), 부()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 지원 여부			여(), 부()	
기타사항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피해 실태조사 결과 위와 같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피해자(유족) 성명 (서명 또는 인)
이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읍·면장 (인)
성 주 군 수 귀하

※ 조사방법
1. 피해농작물별로 작성 2. 현장사진 붙임

개 정 안

[별지3]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실태조사서

피 해 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피해조사결과	인명피해	피해내용		가해야생동물		
		피해경위				
	농작물피해	피해지역				
		피해농작물		가해야생동물		
		경작지면적	㎡	피해면적(A)		㎡
		농작물의 피해율(B)	%	농작물 보상단가(C)		원
		피 해 액 (D=A×B×C)	원	보상비율(E)		%
		최종 산정금액 (F=D×E)				원
피해보상 제한 여부	인명피해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 여부			여(), 부()	
		농업경영활동과 무관한 활동 중 피해 여부			여(), 부()	
		<삭 제>			**<삭 제>**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지원 여부			여(), 부()	
	농작물피해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경작금지지역 해당여부			여(), 부()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지원 여부			여(), 부()	
기타사항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피해 실태조사 결과 위와 같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피해자(유족) 성명 (서명 또는 인)
이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읍·면장 (인)
성 주 군 수 귀하

※ 조사방법
1. 피해농작물별로 작성 2. 현장사진 붙임

현 행	개 정 안

[별지4]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결정 통보서

피해자(신청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인명피해	피해지역			
	피해내용		가해야생동물	
농작물피해	피해지역			
	피해농작물(내용)		가해야생동물	
	경작지면적	(㎡)		
	피해면적	(㎡)		
보상금액		원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수 (인)

[별지4]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결정 통보서

피해자(신청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인명피해	피해지역			
	피해내용		가해야생동물	
농작물피해	피해지역			
	피해농작물(내용)		가해야생동물	
	경작지면적	(㎡)		
	피해면적	(㎡)		
보상금액		원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수 (인)

현 행	개 정 안

[별지5]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

피해자	①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성주군 면 길		
④ 피해내용				
⑤피해자와의 관계				
피해보상금 산정결과	⑥피해보상금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가족관계 등록부 1부.(피해자 사망시)
4. 기타 유족 대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피해자 사망시)
5.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별지5]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

피해자	① 성명		**②생년월일**	
	③ 주소	성주군 면 길		
④ 피해내용				
⑤피해자와의 관계				
피해보상금 산정결과	⑥피해보상금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가족관계 등록부 1부.(피해자 사망시)
4. 기타 유족 대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피해자 사망시)
5.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현 행

[별지6]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신청 및 처리대장(제22조 관련)

연번	피해자			피해발생일	피해내용	보상금신청액	처리결과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상금지급액	보상금지급날짜	마보(사유

개 정 안

[별지6]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신청 및 처리대장(제22조 관련)

연번	피해자			피해발생일	피해내용	보상금신청액	처리결과		
	이름	생년월일	주소				보상금지급액	보상금지급날짜	마보(사유